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람	기관의장

제904호 2012. 7. 13.(금)

차 례

훈 령

- 인천광역시서구훈령 제297호 인천광역시서구도로환경미화원근무규정 전부개정규정 — 1

회 람									
--------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서구

편집 : 기획홍보실 [032-560-4140]

인천광역시서구도로환경미화원근무규정 전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전 년 성

2012년 7월 13일

인천광역시 서구 훈령 제297호

인천광역시서구도로환경미화원근무규정 전부개정규정

인천광역시서구도로환경미화원근무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환경미화원 근무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환경미화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도로환경미화원”이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수행을 위하여 고용한 자를 말한다.

1.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도시환경의 청결 유지·관리(도로 청소, 뒷골목 청소, 무단투기 단속)
2. 생활폐기물·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의 수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사항

제3조(적용 범위) 도로환경미화원의 근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인천광역

시 환경미화원 단체협약(이하 “단체협약”이라 한다)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4조(균등대우) 도로환경미화원은 성별, 종교, 학력, 신분, 직무 여하를 막론하고 인격적·법률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장 환경미화원 준수사항

제5조(도로환경미화원의 의무) ① 도로환경미화원은 주민에게 항상 친절·공정하게 대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 맡은 바 업무를 신속·정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도로환경미화원은 근무 중 금품 등을 습득하거나 위험한 또는 이상한 물건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구 관내를 관할하는 지구대에 지체 없이 신고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수칙의 준수) 도로환경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1. 청소작업 시 반드시 지정된 안전장구를 착용한다.
2. 청소관련 차량을 운전하는 자는 교통관련 법규 등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 운전하여야 한다.
3. 위해요인이 있는 장소는 청소작업 전에 안전대 설치 등으로 안전을 확보한 후 청소를 실시한다.
4. 고가도로 등 차량전용도로 및 일반가로(차도)의 청소작업 시에는 경광등이 부착된 차량 등으로 안전조치 후 청소를 실시한다.
5. 그 밖에 안전과 관련하여 구에서 지급된 장비나 도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안전교육 시 지시하는 내용을 숙지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청소장비 관리) ① 도로환경미화원은 손수레 등 장비의 분실 등을 방지하고 주민 및 차량의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그 밖에 청소작업에 필요한 도구 등 장비 일체에 대하여 당일 작업 전·후에 점검을 실시

하여야 하며 분기 1회 이상 구청장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② 도로환경미화원은 청소장비 일체에 대한 보관책임을 지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청소장비 및 비품의 분실, 파손, 훼손 등에 대하여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8(주민계도) 도로환경미화원은 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음식물폐기물 및 재활용품의 분리 배출
2. 악취·오수발생 폐기물은 물기를 뺀 후 배출
3. 주민 스스로 내 집 앞·내 점포 앞 자율청소
4. 폐기물 감량화 등 그 밖에 지역주민이 실천해야 할 사항

제9조(금지행위) 도로환경미화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주민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주고 받는 행위
2. 업무수행 중 도박, 음주, 근무태만 행위 등
3. 폐기물 도급·수거행위
4. 차등수집, 과다봉사 등 주민의 지탄을 받는 행위
5. 재직기간 또는 병가·휴가기간 중 타 직종 겸직 행위
6. 공공용봉투 판매 또는 대가를 약속받고 배부하는 행위
7. 무고한 투서 및 전체의 화합을 해치는 행위 등
8. 그 밖에 직장 내 질서 및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등

제3장 근무

제10조(업무) 도로환경미화원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수거, 지정된 구역의 간선차도와 인도 등 담당구역 내 뒷골목의 도시환경 청결유지·관리, 도로물청소, 청소차량 운전, 생활폐기물·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사항 등을 수행해야 한다.

제11조(복장) 도로환경미화원은 근무시간 중 청소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지정된

작업복, 안전조끼 및 안전모, 안전화 등을 착용하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

제12조(결근신고 등) ① 도로환경미화원이 예기치 못한 질병·사고 등으로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결근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근 신고 시 질병으로 인하여 7일 이상 결근 시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유로 3일 이상 결근 시에는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로환경미화원은 임의로 지각 또는 조퇴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 또는 조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기록카드) 담당부서의 장은 도로환경미화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별 환경미화원 인사기록카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근무상황부 등) 담당부서의 장은 도로환경미화원에 대한 근무상황부(별지 제1호서식) 및 근무일지(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출근상황을 매일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보조감독원 및 임무) ① 도로환경미화원을 지휘 통솔하기 위하여 도로환경미화원 중에서 보조감독원을 둘 수 있으며, 담당부서의 장이 임명한다.

② 제1항의 보조감독원은 담당부서의 장의 명을 받아 도로환경미화원을 지휘 통솔하여 도로환경 작업 및 도시 청결유지 작업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보조감독원은 당일의 업무수행 결과를 기록정리(별지 제3호서식)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보조감독원으로 임명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반장 및 임무) ① 차량반, 기동처리반, 각 구역 등에 배치된 도로환경미화원의 원활한 업무처리와 통솔을 위해 도로환경미화원 중에서 반장 1명씩을 담당부서의 장이 임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반장은 책임감을 가지고 임무에 임해야 하며, 담당부서의 장의 명을 받아 도로환경미화원을 지휘 통솔하여 도로환경 작업 및 도시 청결유지 작

업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반장으로 임명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교육) 구청장은 도로환경미화원의 안전 및 효율적인 청소 실시와 대민 봉사자로서의 자세 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도로환경미화원 직무교육, 안전 및 소양교육 : 분기 1회 이상
2.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 수시

제18조(증명서 발급) 재직 및 퇴직 도로환경미화원이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등의 제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기록카드 등 관계서류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장 근로기준

제1절 근로시간

제19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휴식시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0조(근무시간 등) ① 환경미화원의 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 : 05:00 ~ 09:00, 13:00 ~ 17:00
2. 토요일 및 공휴일 : 05:00 ~ 09:00
3. 그 밖에 단체협약으로 정한 근무시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청소업무의 폭증이나 계절의 변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도로환경미화원의 근무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도로환경미화원이 구청장의 명을 받아 외근 및 출장근무를 하는 등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경우 1일 8시간 근로로 본다.

④ 근무시간 관리는 담당부서의 장이 총괄 관리하며 각 동 도로환경미화원은 동장이 관리한다.

제21조(연장근로의 제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비상출근 명령) 도로환경미화원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근로의 필요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휴일, 휴가 중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청장의 근무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2절 휴일, 휴가

제23조(휴일)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유급 휴일로 한다.

1. 1월 1일
2. 설날
3. 근로자의 날(5월 1일)
4. 추석
5. 노조창립기념일(9월 23일)
6. 그 밖에 단체협약으로 정한 날

② 제1항 각 호의 휴일이 공휴일과 중복될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로 취급한다.

제24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① 구청장은 도로환경미화원이 선거 그 밖의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사전에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시간을 준다.

② 제1항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그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그 시간의 임금을 지급한다.

④ 「향토예비군설치법」 및 「민방위기본법」에 의하여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시간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준다.

⑤ 제4항에 따라 훈련에 참가하는 도로환경미화원은 소집일 3일 전에 훈련통지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훈련을 받은 후 필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특별휴가 및 공가) 도로환경미화원의 특별 유급휴가 및 공가는 단체협

약에 의한다.

제26조(연차 유급휴가) ① 구청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여 환경미화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통상임금으로 연말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업무상 재해나 질병에 의한 요양기간은 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본다.

③ 연차 유급휴가의 청구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제27조(휴가의 청구)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휴가사용계획서를 휴가발생 3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휴가시기의 변경) 구청장은 연차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청소업무상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29조(유급휴가의 대체) 구청장은 도로환경미화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연차 유급휴가에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도로환경미화원을 휴무시킬 수 있다.

제3절 휴직

제30조(휴직사유) 도로환경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휴직기간 중 임금은 지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1. 개인 사정으로 휴직사유를 기재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2.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없을 경우

제31조(휴직기간) 제30조 각 호의 휴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차적으로 6개월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휴직사유가 소멸되지 않으면 퇴직한 것으로 본다.

제32조(휴직자의 신분) 휴직된 자는 도로환경미화원의 신분을 보유하나 구청

장의 허가 없이 타 직업에 종사한 경우에는 퇴직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3조(차용물의 반환) 도로환경미화원이 퇴직하거나 해고된 경우에는 구청장으로부터 차용한 물건은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분실물에 대하여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5장 징계

제34조(징계) ① 도로환경미화원 징계처분 기준은 별표에 의한다.

② 감봉의 경우, 사안의 정도에 따라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보수의 3분의 1을 삭감한다.

제6장 임금

제35조(임금의 종류) 임금은 기본급과 모든 수당으로 구분하고 월급제로 한다.

제36조(기본급 및 모든 수당, 퇴직금의 결정 등) 기본급 및 모든 수당, 퇴직금 등의 결정 및 지급은 중앙정부의 도로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자료를 참고하여 단체협약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책정된 금액으로 한다.

제37조(임금대장) 구청장은 임금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환경미화원이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8조(임금의 계산시기와 지급기일)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을 당월 20일에 지급하며, 지급 이후 결근 등의 사유에 의한 공제금은 익월에 정산한다.

제39조(임금의 시효) 이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7장 안전 및 보건

제40조(안전보건) 도로환경미화원의 안전보건 관리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법령에 따른다.

제41조(안전대책) 도로환경미화원은 안전시설을 활용하고 안전에 관한 모든 규정과 수칙을 준수하며 재해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이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2조(안전 및 보건 준수사항) 도로환경미화원은 위험방지 및 보건위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근로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 규칙과 지시에 복종할 것
2. 항상 근무지를 정리정돈하고, 재해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할 것
3. 안전장치, 소화설비, 위생설비, 그 밖의 안전 및 위생관련 시설물을 허가 없이 제거, 변경 또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4. 항상 작업장을 청결히 하고 폐기물은 일정한 장소에 내어▽놓으며, 화기사용 금지구역에서는 흡연 및 화기사용을 하지 말 것
5. 구청장이 행하는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은 반드시 받을 것
6. 승인 없이 출입금지 구역의 출입을 삼가 할 것
7. 적화장 청소관련시설·장비 및 주변에 위험물질을 반입 또는 보관하지 말 것

제43조(비상재해) ① 도로환경미화원은 화재, 그 밖의 비상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알았을 때 또는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비상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서로 협력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4조(질병자의 취업제한) ① 법정전염병, 정신병,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법령에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는 취업을 제한한다.

② 환경미화원과 동거하는 가족 또는 동거인이 법정전염병에 전염된 경우 또는 그 의심이 있을 때는 즉시 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제45조(보고) 도로환경미화원은 업무상 상병(傷病) 또는 위험한 전염병이 발생한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장 재해보상

제46조(재해보상) 도로환경미화원이 업무상 부상을 당하였거나 질병에 전염된 경우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구청장은 「근로기준법」 또는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의한 보상을 행한다.

제47조(휴업보상, 장해보상의 예외) 도로환경미화원이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업무상 부상을 당하였거나 질병에 걸리고 또한 구청장이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휴업보상 또는 장해보상을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8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을 받은 자가 같은 사유에 대하여 「민법」 그 밖에 관련법령에 따라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는 그 가액의 한도 내에서 구청장은 보상책임을 면한다.

제49조(구상권 행사)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재해가 발생되고 구청장이 도로환경미화원에게 보상을 한 경우에 구청장은 도로환경미화원을 대위하여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9장 기타

제50조(시행상 해석 기타) 이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1조(규정의 효력) ① 이 규정은 시행일 이전에 입사한 도로환경미화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의 내용 중 「근로기준법」 및 단체협약과 상이

한 규정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또는 단체협약을 우선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환경미화원 관리규정(도로환경미화원 징계처분기준)

구 분	위 반 사 항	처 분 기 준			
		주의	경고	감 봉	해고
발생시	형사입건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 확정자				1회
	무고한 투서 등 총화를 해하는 자				1회
	조장 등의 제도를 임의로 만든 자				1회
	도급행위			1회	2회
	금품요구, 금품수수 또는 거출행위			1회	2회
	자가수거처 폐기물 수거행위 및 청탁			1회	2회
	공공용 봉투 제공 행위			1회	2회
	업무와 관련하여 형사입건 기소되어 300만원 이상 벌금 확정자			1회	2회
	업무와 관련하여 형사입건 기소되어 300만원 미만 벌금 확정자		1회		2회
	음주운전으로 인한 100만원 미만 벌금형		1회	2회	3회
	음주운전으로 인한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벌금형		1회		2회
	음주운전으로 인한 300만원 이상 벌금형			1회	2회
년단위	출근지참 및 조기퇴근	1회	2회	3회	4회
	지시사항 불이행	1회	2회	3회	4회
	담당구역 청소불량	1회	2회	3회	4회
	품위손상	1회	2회	3회	4회
	장비관리 불철저	1회	2회	3회	4회
	복장위반	1회	2회	3회	4회
	안전장구 미착용, 안전의무 불이행	1회	2회	3회	4회
	근무태만	1회	2회	3회	4회
	지역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행위	1회	2회	3회	4회
	근무 중 음주행위		1회	2회	3회
	근무지 무단이탈		1회	2회	3회
	폐기물을 하수구, 빗물받이에 무단투기 행위		1회	2회	3회
	근무 중 주민 등에게 행패		1회	2회	3회
	폐기물 소각행위		1회	2회	3회
	수거한 폐기물을 무단투기 하는 행위		1회	2회	3회
도박 또는 사행행위를 조장한 자		1회	2회	3회	
처 분 의 준	1. 종합처분 : 개개의 처분결과를 합산처분 가. 감봉처분 연 2회 이상 : 해고 나. 경고처분 연 3회 이상 : 해고(형사입건 및 음주로 인한 벌금형은 2회시 해고 가능) 다. 주의처분 연 4회 이상 : 해고 2. 동시에 수 개의 위반행위가 경합 시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함 3. 처분 유효기간은 1차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하는 횟수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도로환경미화원 근무일지

20 년 월 일

담당자	동장(과장)	결 재

근무 상황	총원	근무 인원	사고 인원	사 고 내 역						비고
				결근	조퇴	병가	공가	특별 휴가	기타	

출근 사항	성 명	서 명	성 명	서 명

지시 사항 및 작업 내용	
-----------------------------	--

기 타 사 항	
---------	--

[별지 제3호서식]

도로환경미화원 순찰일지

20 년 월 일

감 독	실무관	주무관	과 장	결 재

근무 상황	총원	근무 인원	사고 인원	사 고 내 역						비고
				결근	조퇴	병가	공가	특별 휴가	기타	

순찰사항	순찰자	순찰시간	순찰지역	순찰결과

합동청소 내역	참여인원	합동작업장소	쓰레기 수거현황	비고

기타사항	
------	--

[별지 제4호서식]

도로환경미화원 인사기록카드 (제13조 관련)

소 속		계약기간				
성 명		주민등록번호		호주 및 관계		
주 소		전화번호				
학 력	부 터		까 지		학교명 및 전공학과	
자 격 면 허						
년 월 일		종 별		년 월 일		
경 력	근무부서	근무기간	일일단가	월평균임금	담당업무	비고
특기사항						

성명					
근무지 지정					
년월일	근무지	작업구간			비고
가족사항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력	직업·직장·직위
포상	년월일	상훈명	증서번호	훈종/훈격	수상기관
산업시찰	년월일	시찰목적명			산업시찰장소
징계	징계일자	징계종류	징계사유		징계기관